

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11. 19. 칠곡군수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
다.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
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출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)

○ 제출이유

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가. 목적·범위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
나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(안 제4조)

다. 긴급점검 대상(안 제5조)

라.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(안 제6조)

마. 안전진단의 대상(안 제7조)

바.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(안 제8조~제9조)

사.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)

아.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남성태)

○ 본 조례안은

「건축물관리법」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